

12. 宅地超過所有負擔金 賦課에 따른 申告案内

資料提供：建設部

- 지난 3. 2부터 실시하고 있는 6대도시 택지소유실태 정밀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최종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부과대상자를 잠정집계한 결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22,820건으로 추산되며 부과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약 1,000명(법인 포함)을 상회하고 6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6대도시안에 택지를 초과소유한 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50명)이며, 부과대상자가 전혀 없는 지역도 6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잠정 집계결과〉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개도
22,820건	9,711	3,526	2,220	2,074	1,979	2,326	984

- 이러한 택지정밀조사의 마무리작업과 병행하여 건설부는 4월 15일에 200평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게 일단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임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부과 제외신청과 부과대상 택지자진신고를 기한내에 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토록 일선 행정기관에 지시하였다.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이용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라 신청서가 반려된 택지,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택지 기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5월 2일까지 주소지의 시·군·구에 부과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공부상 택지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서류를 갖추

- 어 5월 2일까지 주소지에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여 부담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도록 하는 한편
 - 특히 지금까지 신고치 않은 초과소유택지에 대하여 이번 기간내에 신고토록 하여 가구별 택지전산화 완료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감면혜택 제외)을 받지 않도록 안내
- 이렇게 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3월 2일부터 실시한 정밀조사내용과 대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과대상자에게 6월 30일까지 부과예정 통지를 하게 되며 이의신청을 받아 부과대상택지를 최종 확정된 다음 8월말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 한편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택지정밀조사가 전국의 개별지가조사업무 등과 중복됨에 따라 미진한 시·군·구가 있어 건설부는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지고 직접 진두지휘하여 부담금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다(건설부장관의 친서발송).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택지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 주택이 건축된 하나의 택지를 소유한 자로서 200평 초과부분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
- 하나의 택지를 소유한 가구로서 자경하는 농·어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한옥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택지
- 이용·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른 건축규제조치로 신청서를 반려받은 택지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른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택지
- 시·군·구에 당초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라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게 사용하거나 이용·개발의무기간안에 있는 택지등